

제1장 총 칙

1. 목적 등

- (1) 목적: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 실시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2) 관장: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2. 용어의 정의(★★★)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일용근로자 or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①건설공사 등에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②그 밖의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or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적용)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대상 근로자임

(2) 사용자

-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포함X

(3) 소 득: “비과세소득을 제외”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4) “평균” 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5) “기준” 소득월액 (연금보험료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 물가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하한액 조정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은 상·하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
고시된 상·하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6) 연금보험료(★)

사업장가입자	본담금(사업주) + 기여금(사업장 가입자)
지역·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내는 금액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
- 업무: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등
- 임원: 원장, 이사 14명 및 감사 1명
(원장, 이사 중 3명 및 감사는 상임이며,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임)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원 업무의 효율적 처리위해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두며 그 하부기관으로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제6장 보험료(★★)

제1절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1. 월별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1.52% (2021년)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6.86%)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 보험료율(6.86%) 연 3,400만원 초과자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임금·급료 등을 말함

<보수에 제외되는 금품>(★)

- 질비변상적인 성격의 것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2020. 12. 10.시행)

1.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1)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2)적용제외 예술인

-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예술인 중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단기예술인)은 적용○

(3)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문화예술용역계약을 발주하는 사업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사유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함

-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
-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원수급인

(4)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

-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및 근로자·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인정
- 근로자로서의 이중취득 및 임의가입 방식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역 이중취득: 제한

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1)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실업상태)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②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추가요건

-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3)피보험단위기간

-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을 기준으로, 예술인으로서의 기여요건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의 비율을 근로자의 기준기간 대비 피보험단위기간의 비율로 충족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구직급여

-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함)
- '기초일액'의 상한액은 11만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함(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
-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로 규정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X**
(다만,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X)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로 함
(다만,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역상 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하고,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함**

- **당연가입 대상**(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 근로 등) 또는 **자영업활동 한 경우: 지급 중지**
- **수급기간 중 소득이 최저임금월액의 20%까지는 전액지급, 20% 초과시 초과된 금액 공제**

3.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

<출산전후급여등의 수급요건>

- ①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②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다만,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질병·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의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할 것)
- ③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
- 상·하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상한액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제2절 특례제도

1.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보험가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법 적용가능

<가입승인요건>

-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보험관계의 성립일>

- 파견~~예~~정자: ~~출~~국일
- 파견~~된~~ 사람: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수액은 현장실습생이 받은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가능

3.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신설조문

-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된다
- 예술인의 보수액: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사업의 폐업·도산 등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기준보수 적용**
-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함**(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같이 1.6% 적용: 예술인 0.8%, 사업주 0.8%)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을 신고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문5. 정답: ①, ③

산재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커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⑤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애등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문2. 정답: ③, ⑤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애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을 것
-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 ②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다.
- ③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애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 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는다.

2012년 제21회 기출문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
 - ④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문1. 정답: 없음

<산재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적 제공 and 보수 받아 생활하는 자로써 노무제공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골프장 캐디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쿼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화물차주로서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피견인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제3절 보험료율 등

1. 보험료율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둠
- 가입자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가능

제4절 보험료의 면제 및 경감(★)

1. 보험료의 면제

(1) 면제 사유 **법 개정**

-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다만,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만 면제

(2) 면제 기간

급여정지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와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음

2. 보험료의 경감 등

섬·벽지·농어촌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생활이 어려운 자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다.
12.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3.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다.
14. 건강검진은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15.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6.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7.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8.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이 정지된다.
1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를 제외한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0.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정지된다.
21.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22. 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11. (○) 건보령 제23조 제1항
 12. (○) 건보령 제25조 제1항
 13. (○) 건보령 제25조 제2항 제3호
 14. (X)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건보령 제25조 제3항)
 15. (X)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건보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즉,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고는 제외된다.**
 16. (○) 건보법 제53조 제1항 제2호
 17. (○) 건보법 제53조 제1항 제4호
 18. (X) **“그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즉 정지가 아니라 제한이다**(건보법 제53조 제2항)
 19. (X) 공단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건보법 제53조 제3항 제2호)
 20. (○) 건보법 제54조 **제2호**
 21. (○) 건보법 제54조 **제4호**
 22. (X) 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건보규칙 제27조 제1항)

2019년 제28회 기출문제

1. 사회보험 관련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이다.
- ③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나,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비상근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문1. 정답: ②

- ① 고보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② **적용대상이다**(고보령 제3조 제1항 단서)
- ③ 국연법 제8조 제2항
- ④⑤ 건보령 제9조 제1호

2.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의 제한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③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를 제외한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문2. 정답: ④

- ① 건보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② 건보법 제53조 제2항
- ③ 건보법 제54조 제2호
- ④ 공단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건보법 제53조 제3항 제2호)
- ⑤ 건보법 제54조 제4호

3.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와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 ⑤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와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문3. 정답: ④

- ① 건보법 제69조 제5항
- ② 건보법 제76조 제2항
- ③ 건보법 제76조 제3항
-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건보법 제76조 제1항 단서)
- ⑤ 건보법 제76조 제1항 제2호

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입자는?

- ① 직장가입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② 직장가입자로서 출산 휴가 중인 사람
- ③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 ④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⑤ 직장가입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문1. 정답: ⑤

- ① 건보법 제76조 제1항
- ② 건보법 제76조 제2항
- ③ 건보법 제76조 제3항
- ④ 건보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⑤ 공무원인 직장가입자와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건보법 제76조 제1항)

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 ②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③ 고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④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⑤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 경우

문2. 정답: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의 정지)>

- 1. 삭제
-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3.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①③④⑤는 “**급여의 제한 사유**”이다(건보법 제53조 제1항)

문1. 정답: ④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업무로 생긴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 ②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⑤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문2. 정답: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의 정지)>

1. 삭제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①②③④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이다(건보법 제53조)

문2. 정답: ③

- ① 건보법 제45조 제1항
- ② 건보법 제45조 제2항
- ③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건보법 제45조 제3항)
- ④ 건보법 제45조 제6항
- ⑤ 건보법 제45조 제4항

2011년 제20회 기출문제

1.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②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③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중 보험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④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문1. 정답: ①

-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건보법 제53조 제1항 제1호)
- ② 건보법 제53조 제1항 제4호
- ③ 건보법 제54조 제2호
- ④ 건보법 제55조
- ⑤ 건보법 제58조 제1항

2.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②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④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⑤ 병역법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문2. 정답: ⑤

- ① 건보법 제6조 제2항 제1호
- ② 건보법 제5조 제1항 제1호
- ③ 건보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9조 제3호
- ④ 건보법 제6조 제2항 제3호
- 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한다(건보법 제6조 제2항 제2호)

2010년 제19회 기출문제

1.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아닌 것은?

- ① 요양비 ② 임신·출산 진료비 ③ 요양급여 ④ 유족급여 ⑤ 건강검진

문1. 정답: ④

유족급여는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이다(산재법 제62조)

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와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한다.
- ② 직장가입자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면제한다.
- ③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면제한다.
- ④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50% 감액한다.
- ⑤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문2. 정답: ④

- ① 건보법 제54조 제2호
- ② 건보법 제74조 제1항
- ③ 건보법 제74조 제1항
- ④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건보법 제74조 제1항 단서 및 건보법 제54조 제2호)
- ⑤ 건보법 제70조 제2항

3.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요양급여는 진찰, 약제지급, 수술, 재활, 입원 등 현물급여이다.
- ②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④ 가입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 ⑤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3. 정답: ⑤

- ① 건보법 제41조 제1항
- ② 건보법 제41조 제4항
- ③ 건보법 제42조 제5항
- ④⑤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건보법 제49조 제1항)

제6절 보험료의 조정

1.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조정함
- 월별보험료 증액시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 증액시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징수

2. 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前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제7절 보험료의 지원 및 경감

1. 고용보험료의 지원 2021년 기준

-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근로자의 임금이 220만원 미만일 것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신규가입자): 규모 구분없이 80% 지원

2. 보험료 등의 경감

-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30% 경감
- 정보통신망 이용한 신고시 보험료 경감(단, 보험사무대행기관 통한 신고는 제외)

제8절 보험료의 총당 및 가산금 등

1. 보험료 등 과납액의 총당 및 반환

<과납액의 총당순위>(★★★)

- 제납처분비
-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 연체금
- 가산금
-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 환수금

2.가산금의 징수(★)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는 등 사실조사에 따라 보험료 징수하는 경우
- 가 산 금
 -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보수총액 수정신고 or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가산금의 100분의 50 경감 (즉, 보험료의 100분의 5 부과)
-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이거나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부과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이 징수

3.연체금의 징수(★★)

(1)납부기한까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 내지 않은 경우 징수한다

(2)연체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1/1500 씩 가산 단, 20/1000 초과못함
- 납부기한 30일 지난 후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1/6000 씩 추가징수 but 50/1000 넘지 못함

(3)연체금 징수의 예외(즉, 부과X)

- 연체금 · 가산금 및 법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 천재지변 or 부득이한 사유

4.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1)신고 게을리 or 납부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 발생시 징수

(2)징수금액(★)

신고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장의비 · 재해보상을 제외한 보험급여액의 50% 징수함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X)

납부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장의비 · 재해보상을 제외한 보험급여액의 10% 징수함
(사업주가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X)

5.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문서로써 통지, 독촉장 발부시 10일 이상 여유를 뒤야하며 연대납부의무자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보험료율이 인하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개산보험료를 감액 조정한다.
25.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26.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27.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28. 환수대상이 되는 고용보험료의 지원금의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이다.
29. 사업주가 법이 정한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 보험료 가산금의 징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이다.
30. 사업주가 법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이다.
31.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이다.
3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3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촉할 경우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7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보험료의 총액이 500만원이라면 납부기한 전에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
35. 사업주는 납부기한이 지난 고용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
24. (○) 징수법 제18조 제1항
 25. (X) 조정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한다(징수법 제18조 제1항)
 26. (○) 징수법 제18조 제1항 및 징수령 제24조 제1항
 27. (X)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징수법 제19조의2)
 28. (○) 징수법 제21조의2 제2항
 29. (○) 징수법 제24조 제1항
 30. (X)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징수법 25조 제1항)
 31. (○) 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32. (○) 징수령 제39조 제1항
 33. (X)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징수법 제27조 제3항)
 34. (X)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징수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
 35. (X)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징수법 제27조의3 제1항)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가)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월별보험료의 (나)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월별보험료의 (다)을 넘지 못한다.

- ① 가: 1, 나: 1천분의 1, 다: 1천분의 30 ② 가: 1, 나: 6천분의 1, 다: 1천분의 50
 ③ 가: 1, 나: 6천분의 1, 다: 1천분의 90 ④ 가: 7, 나: 1천분의 1, 다: 1천분의 30
 ⑤ 가: 7, 나: 6천분의 1, 다: 1천분의 90

문4. 정답: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월별보험료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월별보험료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징수법 제25조 제3항)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수총액 등의 신고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수총액신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국민연금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③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④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⑤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문2. 정답: ③

- ①② 국연법 제115조 제1항 전단
- ③ 3년이 아니라 “5년”이다(국연법 제115조 제1항 후단)
- ④ 국연법 제115조 제2항
- ⑤ 국연법 제115조 제5항

2016년 제25회 기출문제

1.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장애등급 2등급인 자녀가 25세가 된 때
- ㄴ.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ㄷ.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게 된 때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문1. 정답: ②

- ㄱ: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이므로 연령에 관계없이 소멸하지 않는다(국연법 제75조 제1항 제4호)
- ㄴ: 수급권이 소멸된다(국연법 제75조 제1항 제3호)
- ㄷ: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국연법 제76조 제7항)